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8
----------	-------

제출년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와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리” 장으로 통합하고 폐지함
- 다. 상위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함
  - 정보화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보완(제2장)
  - 정보화의 추진 보완(제3장)
  -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신설(제4장)
  - 정보화교육 보완(제6장)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리 신설(제7장)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1. 8. 4 ~ 8. 24(제출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9. 22) : 수정의결

붙 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2. “인터넷”이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매체물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14.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총칭한다.

1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17.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PCRM)”란 가입 회원들에게 행정정보 등을 대량메일시스템으로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하여 참고자료로 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

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6.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7.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8. 분야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초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구의원,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산 정보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또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보호시스템의 현황조사·분석 및 정보보호 관련 시책의 수립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3장 정보화의 추진

-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 제13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합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보화전담부서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정보보호 및 정보통합센터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4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정보화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관련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 구청장은 구 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설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책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업무처리)** ①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5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3.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구청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등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3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법,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화 자료 관리

**제33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 등은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의1 납부방법을 준용한다.

**제35조(수수료 감면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장 정보화교육

**제36조(공무원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서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구민 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교육시설·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3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납입 수강료 중 전체 수강일수에 비례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40조(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①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자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

키기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제41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이용자(이하 “이용자”란 한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전자우편 서비스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43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 등을 명시하여 책임있는 관리 및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4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는 게시물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9.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45조(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책고객서비스 및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4의 금품제공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두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5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의하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구민과 소속 공무원 등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는 제47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본다.

[별표 1]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관리 유형	부과 대상	소요경비 산출 방법	기준
장소 임대	장소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실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 / 시스템실면적) × 대부요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li> <li>· 대부료 등의 요율(제25조)</li> <li>·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7조)</li> <li>○ 전용면적 : 2.88㎡ (19" 랙기준)</li> </ul>
	전기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전기 사용료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기본요금</li> </ul> </li> <li>○ 향온향습기 전기사용료(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량 : 계측값</li> <li>○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 (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li> <li>○ 사용량 : (해당 서버사용량 / 전체 서버사용량) × 시스템실 향온향습기 전체사용량</li> <li>○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 (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li> </ul>
자원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금액 × 요율 × 1.1 × 자원 사용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li> <li>○ 1.1 : 부가가치세</li> <li>○ 자원사용율 : 해당 자원 사용량 / 전체 자원사용량</li> </ul>
네트워크 사용료	회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사용료 총금액 × (사용대역폭 / 총대역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li> </ul>
	통신장비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금액 × 요율 × 1.1 × (사용 port수 / 전체 port 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li> </ul>

[별표 2]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제34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4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별표 3]

정보화교육의 수강료(제39조제1항 관련)

교육시간	수강료
10시간~20시간	20,000원 이하
21시간~30시간	30,000원 이하
31시간~50시간	40,000원 이하

[별표 4]

금품제공 기준(제46조제2항 관련)

구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심사 또는 추천	3만원 이하	100만원 이내	10회 이내
설문 또는 투표	응답자 중 추천	1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15회 이내
퀴즈 또는 게임	정답자 중 추천	1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5회 이내

[별표 5]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47조제3항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점수	부여방법
가.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가입시 1회
나.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다.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이 경우, 게시물은 직접 구정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적용할 것	10점 이상 5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 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할 것
라. 투표 또는 설문조사 응답	홈페이지 회원	50점	투표 또는 설문조사별 1회

비고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